##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61 발의연월일: 2021. 1. 27.

발 의 자: 박완주·최혜영·윤영찬

김승남 · 송재호 · 임호선

한병도 · 임봉성 · 이해식

민홍철 · 김영배 · 오영환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최근에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해당 업체의 경우 성능인증 취소처분만을 받았는데, 이러한 경우불법행위의 중함에 비하여 그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이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8 호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##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 검사를 받은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50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	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8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
	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
	제품검사를 받은 자
9. ~ 11. (생 략)	9. ~ 11. (현행과 같음)